

07

원산지 관리, 현장의 목소리

동남아시아 국가 등, 교역국 자의적인 HS CODE 사용에 따른
문제와 대응





동남아시아 국가 등, 교역국 자의적인 HS CODE 사용에 따른 문제와 대응



정재환
무کم사 관세사무소 대표관세사

1. 들어가며

HS CODE는 세계관세기구(WCO)가 주도하여 제정한 상품 분류 코드로, 전 세계에서 통용된다. 6자리까지는 전 세계 공통적으로 사용되며, 7자리 이후부터는 각국이 세부적으로 분류해 활용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10자리의 HS CODE를 사용하고 있다. 하나의 물품에는 하나의 HS CODE가 부여되어야 하며, 공통된 분류기준이 있기 때문에 수출국의 HS CODE와 수입국의 HS CODE가 상이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출국의 HS CODE와 수입국의 HS CODE가 상이해지는 경우가 있고, 그것이 때로는 자연스러운 것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문제를 야기하는 경우도 있다.

2. HS CODE가 상이한 이유

사실 HS CODE는 수출국보다 수입국의 입장에서 훨씬 중요하다. 수출국의 입장에서는 간이정액환급 등 HS CODE에 따라 환급액이 달라지는 경우 등을 제외하면 수입과 비교하여 크게 이슈가 되는 편은 아니다. 하지만 수입국에서는 HS CODE의 분류 방식에 따라 수입 요건과 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예를 들어 티셔츠를 수입한다고 가정했을 때, 티셔츠의 HS CODE는 제6109.10-1000호에 분류되어 기본세율 13%가 적용된다. 하지만, 이를 유아용 의류의 HS CODE인 제6111.20-1000호에 분류되면 기본세율은 8%로 낮아지지만, 어린이안전제품특별법의 적용을 받아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고 수입하여야 한다. 만일 해당 의류가 역사적인 수집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HS CODE 제9705.10-0000호에 분류되어 기본세율 0%가 적용된다.

표 1 티셔츠의 품목분류와 관세

| | 제6109.10-1000호 | 제6111.20-1000호 | 제9705.10-0000호 |
|-----|----------------|----------------|----------------|
| 품명 | 티셔츠 | 유아용 의류 | 수집품과 표본 |
| 관세율 | 13% | 8% | 0% |





그림 1 후회시맨 수집품인정

| 24. 11. 29. 오후 12:37 | | 관세법령정보포털 CLIP |
|----------------------|------------------------------------------------------------------------------------------------------------------------------------------------------------------------------------------------------------------------------------------------------------------------------------------------------------------------------------------------------------------------------------------------------------------------------------------------------------------------------------------------------------------------------------------------------------------------------------------------------------------------------------------------------------------------------------------------------------------------------------------------------------------------------------------------------------------------------------------------------------------------------------|---------------|
|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2569 | |
| 시행일자 | 2018-05-24 | |
| 시행기관 | 관세청가분류팀 | |
| 결정세번 | 9705.00-0000 | |
| 품명 | 1986 지구방위대 후회시맨(조선성 플래시맨) 레드후회시 촬영용 헬멧과 의상; JAPAN | |
| 물품설명 | <p>1986년 지구방위대 후회시맨(조선성 플래시맨) 레드후회시 촬영용 헬멧과 의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레드 후회시맨(배우 : 타루미 토타)가 착용했던 32년된 의상 - 물품 구성 : 의상, 헬멧, 벨트, 장갑 - 물품 가격 : 경매사이트(아후재팬) 낙찰가 155만3천엔(한화 약 1,543만원 상당) <p>* 조선성 플래시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86년 일본 토에이(東映) 프로덕션에서 기획, 제작하여 일본 아사히 TV 방영 작품 (1986.3.1~1987.2.21) - 조선성 플래시맨(지구방위대 후회시맨)은 국내 최초 수입된 전대물(일본에서 시작된 특수 촬영물로 다수가 팀을 이루어 각자의 역할을 맡아 지구를 구하거나 악당을 물리친다는 내용을 다루는 장르) | |
| 결정사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율표 제11부 주1 "이 부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서, 제97류의 물품"으로 규정함에 따라 제97류 해당여부를 검토함 - 관세율표 제97류 주 4 가에서 "이 류와 이 표의 다른 류로 동시에 분류될 수 있는 물품은 주 제1호 부터 주 제3호까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부 이 류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 관세율표 제9705호에는 "수집품과 표본(동물학·식물학·광물학·해부학·사학·고고학·고생물학·민족학 및 고전학(古錢學)에 관한 것에 한정한다)"를 규정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의 물품은 본질적인 가치는 적지만 그 희소성·집합(their grouping)-결오망의 관점에서 흥미를 얻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B) 사학(historical)-민족학(ethnographic)-고생물학(paleontological)-고고학(archaeological)에 관한 수집품과 표본, (1) 고대인의 활동을 연구하는데 적합한 유물. 예: 미라-석관-무기-승배물-의류-영사소유의 물품(articles which have belonged to famous persons)을 예시하고 있음 - 본 물품은 1986년 지구방위대 후회시맨(조선성 플래시맨: 배우 타루미 토타) 레드후회시 촬영용 헬멧과 의상으로서 전대물의 방송사적 측면에서 그 당시의 방송사를 연구하는 자료가 될 수 있는 사학(historical)에 관한 수집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705.00-0000호에 분류함 | |
| 이미지건수 | 1 | |
| 관련 이미지 | | |

우리나라는 2018년 5월 24일, 일본 후회시맨의 실제 착용의상을 제9705호의 수집품으로 인정하여 관세율 0%의 품목으로 분류했던 사례가 있다(품목분류3과-2569).



품목분류 기준이 모든 물품에 완벽하게 대응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실제 다양한 입장에 의해, 다양하게 분류될 수 있는 것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문제이다. 이를 특정 품목의 품목분류가 애매하여 2개 이상의 HS CODE로 분류할 수 있다고 하여 경합세번이라 표현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블루투스 스피커를 통신기기로 분류할지, 음향기기로 분

류할지, DMB폰을 휴대폰으로 분류할지, TV로 분류할지, VR을 게임기로 분류할지, 3D 안경으로 분류할지 등은 한 때 전 세계적으로 발생했던 문제이고, 비슷한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것이다. 이런 문제는 과세관청과 납세자의 합리적인 조율과 증빙을 통해, 그리고 세계관세기구(WCO ; World Customs Organization) 또는 각 국가의 공정한 기관을 통해 HS CODE가 확정된다.

표 2 VR 기기(Virtual Reality)의 품목분류와 관세

| | 제9004.90-2000호 | 제9504.50-1000호 |
|-----|----------------|----------------|
| 품명 | 3D 입체영상용 안경 | 비디오게임용구 |
| 관세율 | 기본관세 / 8% | WTO 양허관세 / 0% |

그림 2 플레이스테이션 VR



플레이스테이션 VR은 게임기에 전용적으로 연결되는 게임기 부속기기로 인정되어 관세율 0%를 적용받고 있다.

이렇듯, 동일한 물품이 WCO 등에 의해 품목분류가 확정되기 전에는, 국가별로 상이하게 분류하거나, 수입자별로 상이하게 분류하는 것은 그렇게까지 드문 일은 아니다. 하지만 수출국과 수입국의 HS CODE가 상이하여 발생하는 진짜 문제는 수입국에서 임의로, 그리고 부당하게 품목분류를 하여 수출자가 피해를 받는 경우이다. 그렇다면, 수입국에서 임의로 품목분류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수입국 과세관청의 입장에서 보면, 동일한 물품이지만 어디로 분류하는지에 따라 수입요건 또는 세율이 달라지는 경우, 아무래도 보수적인 입장에서 세율이 높은 쪽, 그리고 수입요건이 엄격한 쪽으로 분류하려는 경향이 있다.

수입자(납세의무자)의 입장에서 보면, 세관의 입장과는 반대로, 수입요건이 덜 엄격한 쪽, 그리고 세율이 낮은 쪽으로 분류하려는 경향이 있다. 특히 동남아시아국가



및 인도 등 몇몇 국가에서 이러한 문제가 자주 발생한다.

물론, 실제 물품과 다른 전혀 다른 물품으로 HS CODE 품목분류를 하는 경우에는 관세법 위반에 해당된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경합세번이라 불리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이는 한 품목이 여러 세 번으로 분류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때 수입자는 일반적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HS CODE를 선택하려고 한다.

수입자의 입장에서 임의로 HS CODE를 분류하고자 하는 경우, 사실 수출신고 시의 HS CODE와 수입 시의 HS CODE가 반드시 동일한 필요는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에는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게 된다. 관세사 입장에서도 수출신고 시 품목분류를 하면서 수입국에서 어떻게 분류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마찬가지로 수입신고 시 품목분류를 하는 경우에도, 수출국 HS CODE는 어디까지나 참고용으로 확인할 뿐이지, 최종적으로는 수입국 기준에 따라 별도로 HS CODE를 분류하게 된다.

3. 원산지증명서 발행과 HS CODE

수출국 HS CODE와 수입국 HS CODE가 원칙적으로 동일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FTA 협정별 특혜 원산지증명서가 발행되는 경우이다. 수출국 HS CODE와 수입국 HS CODE가 상이하면 FTA 원산지증명서의 형식적 요건 및 실체적 요건에 문제가 발생한다.

원산지증명서는 수출 시점의 HS CODE를 기준으로 발행한다. 수출자가 계약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할 때, 해당 문서에는 수출국의 HS CODE가 기재된다. 그러나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HS CODE는 수입국 HS CODE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수입국에서 원산지증명서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연락을 수입자로부터 받게 되면, 수출자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수출자는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했고, 수입국에서 해당 원산지증명서를 사용하지 못하여 관세를 납부하는 것이 무슨 문제인가 싶을 수도 있다. 엄밀히 말하면 수출자 입장에서는 수입국에서 관세가 얼마나 나오는지, 수입자가 그 관세를 어떻게 납부하여야 하는지는 관심이 없을 수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수출계약 단계에서 원산지증명서를 통해 수입국에서 관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계약서의 조항으로 들어가 있어 문제가 된다. 수입국



에서 원산지증명서의 효력이 부인되어 부담하게 된 관세는 계약상 수출자에게 전가되는 경우가 많다. 원산지증명서의 발행이 계약조건이 아닌 경우라 할지라도, 수입자는 관세를 납부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수입국에서 시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수입을 하였는데, 관세를 부담하게 되는 시점에, 해당 물품의 가격경쟁력이 저하되어 수입할 필요가 없게 되고, 이는 수출국의 거래단절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사례는 관세사로서 업무를 하다보면 굉장히 빈번하게 볼 수 있다. 수출국과 수입국의 HS CODE가 상이한 경우, 원산지증명서에 수입국 HS CODE가 기재되는 것은 불가능할까? 정답은 “가능하다” 이다. 다만, 세관의 요청에 의해 몇몇 사항에 대해 소명을 하여야 한다(특기 기관발급 국가의 경우).

우리나라 세관 입장에서는 수출신고 된 HS CODE와 원산지증명서의 HS CODE가 상이할 경우 합리적으로 다음의 두 가지를 의심하게 된다.

- 수출국 HS CODE는 FTA 원산지 양허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또는 양허대상이지만 비교적 관세가 높기 때문에, 양허대상이면서 관세가 0%인 HS CODE로 임의로 분류하려는 것은 아닌지 여부
- 수출국 HS CODE로는 원산지결정기준이 엄격하여, 조금 더 완화된 HS CODE로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하려는 것은 아닌지 여부

이 두가지를 소명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우선 수입국에서 해당 물품을 해당 HS CODE로 실제 수입하고 있다는, 또는 해당 국가에서는 그렇게 분류하는게 적정하다는 공적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수입국가 수입신고필증, 품목번호확인서, 사전심사결정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면, 양허대상이 아닌, 또는 세율이 더 낮은 쪽으로 임의로 분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소명할 수 있다.

다음으로, 원산지결정기준 자체가 수출국 HS CODE와 수입국 HS CODE 어느 쪽을 기준으로 해도 충족이 된다는 판정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로서,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이 어려워 임의로 HS CODE를 변경했다는 오해를 피할 수 있다.

이렇게 두 가지에 대해서만 소명을 하면, 예외적으로 수출신고 HS CODE가 아닌 수입국 기준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할 수 있게 된다.

수출자가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하는 경우, 사전에 수입국 HS CODE를 확인 후 수입국 기준으로 발행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이미 수출국 기준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하여 수입국으로 송부하였는데, 수입국에서 해당 원산지증명서의 효력이 부인되는 경우 계약관계가 복잡해질 수 있다. 특히, 원산지증명서를 정정하여 발행한다고 하여도, 기 발행된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반환하여야 하는데, 원산지증명서가 이미 수입국으로 발송된 경우 수입국 통관지연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입신고 시 관세납부 후 사후에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여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는 사후 적용을 검토해볼 수 있는데, 이 역시 국가에 따라서는 까다롭거나 불가능한 경우가 있으므로 완전한 해결방법이 될 수는 없다.

수출자는 원산지증명서를 정식으로 발행했기 때문에 면책을 주장할 것이고, 수입자는 수입국에서 효력이 없는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한 수출자에게 책임이 있음을 주장하면서 분쟁이 발생한다.

또한 수출자는 계약단계에서 원산지증명서는 수출국 HS CODE를 기준으로 발행하며, 수입국에서 별도의 HS CODE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원산지판정과 증명서류 등에 의해 발행이 불가할 수 있다고 명시를 하여야, 계약적으로 책임을 면할 수 있다.

만일, 수입자가 원산지판정을 쉽게 하고, 낮은 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실제 물품과 다른 임의의 HS CODE를 요구한 것이라면 수출자가 아무리 노력해도 원산지증명서 발행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계약단계에서 수출물품의 HS CODE를 확정하고 원산지증명서 발행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수입국 세관의 HS CODE 임의분류

사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수입국 세관 차원에서 임의로 HS CODE를 분류하는 것이다. 임의로 세율이 훨씬 높은 쪽으로 분류를 하여 수입자체를 방해하거나, 수입요건이 강화된 쪽으로 분류를 하여 수입을 어렵게 하는 것이다. 이는 수입자와 수입국 세관의 문제이기 때문에, 수출자 입장에서 책임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수 있으나, 거래관계가 지속될 수 없어, 결국 수출기업의 매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보호무역이 활성화되고 있는 요즘, 수입국이 가장 용이하게 보호무역을 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임의의 HS CODE 품목분류이다. 일부 동남아시아국가 및 인도 등 몇몇 나라에서 이런 문제가 특히 많이 발생하는데, 이런 국가의 경우, 이미 우리나라 기업이 진출하여 현지에서 제조 및 판매를 하는 경우에 문제가 발생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FTA를 활용해 원자재 및 물품을 수입하여 현지에서 제조 및 판매를 하고 있는데, 임의의 HS CODE 품목분류는 수입요건 강화로 인해 수입이 지연되거나 높은 관세를 부담하게 되어, 현지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의미가 크게 퇴색될 수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 많은 기업들이 이러한 문제로 고통을 겪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공식적으로는 코트라, 한국 관세청의 현지전문가인 관세관, 우리나라 관세평가 분류원의 HS분쟁신고센터 등을 통해 도움 받을 수 있으며, 필요시 WCO에 제소하는 방법도 있다. 그러나 문제 해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고 그 과정에서 일부 비관세 장벽 등 무역보복 등의 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이유로 대기업일수록 특정국가의 무역의존도를 낮추고 수출 시장을 다변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문제는 우리나라 중소 수출기업이다. 특정국가 수출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은 단순히 해당 국가 의존도를 줄이는 것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게다가 많은 중소기업이 인코텀즈 DDP 규칙으로 수출하고 있고, 이로 인해 수입과 관련된 모든 책임을 수출자가 부담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5. DDP와 수입관세

그럼 도대체 인코텀즈 DDP 수출이 왜 문제가 되는 것일까?

DDP 규칙은 수출자(매도인)가 수입국 통관절차를 수행하고 관세 및 모든 내국세를 부담한다. 통관절차는 실제 수입국 포워더 등을 통해 진행이 되는데, 정상적인 경우라면 수입통관비용이 조금 더 부담될 수 있다는 점 외에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하지만, 수입국 세관이 임의로 HS CODE 품목분류를 하는 경우 문제가 발생한다. 바로 임의 HS CODE 분류에 따른 과도한 수입요건비용(인증비용)과 높은 관세 등이 모두 수출자의 부담이 된다는 것이다.

일부 기업은 매출 마진을 약 10%로 기대하고 수출했지만, 실제로 관세, 내국세, 수입 통관 비용 등이 30% 이상 발생해 오히려 역마진이 나는 경우도 있다. 무엇보다

DDP 규칙의 또 하나의 문제는, 수입국의 과세가격 기준(대부분 CIF)에 맞추기 위해 현지에서 발생한 관세, 내국세, 내륙운송비, 각종 부대비용 등을 공제하여 신고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일부 국가의 세관에서는 비용이 과도하게 공제가 되었다고 주장하고 이를 저가신고로 간주하여 과세가격을 강제로 인상하는 사례도 발생한다. 이로 인해 수출기업은 수출하고도 오히려 손해를 보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수출자는 DDP 수출 시 무엇이 문제될 수 있는지를 이해하고, 수입국 HS CODE를 사전에 확인하며, 수출국과 수입국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코트라, 관세청 관세관 등의 기관을 확인하고, 무엇보다, 현지에서 업무수행을 도와줄 파트너 기업과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여야 할 것이다.

선진국이 보호무역을 선언하면서, 우리나라 수출기업들의 수출전략이 대폭 수정되고 있다. 여기에, 개발도상국의 임의 HS CODE 분류 등 전통적 방식에 의한 보호무역 역시 계속하여 확산되고 있다.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입장에서, 정부 차원에서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고, 코트라, 세관, 원산지정보원, 그리고 각 지역의 통상센터에서 적극적인 교육을 통해 이러한 문제에 대해 완전한 예방은 하지 못하더라도, 무엇이 문제될 수 있는지 인지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수출자의 입장에서 사전에 수출물품의 수입국 HS CODE를 확인하여, 사후에 불필요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하고, 사전에 합의되지 않는 HS CODE로 인한 추가 관세 및 인증비용 등은 수출자의 책임이 아님을 계약단계에서 분명히 하여야 한다. 현지에서 제조를 하는 기업의 경우는, 한국에서 수입하는 원자재 등에 대해 관세사 등 품목분류 전문가의 사전검증을 받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실제로

많은 해외 진출 기업들은 현지에서 근무할 한국 관세사를 채용함과 동시에, 코트라, 관세관 등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더욱 많은 불확실성을 초래하고 있으며, 이는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 확산을 부추길 가능성이 있다.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기업들이 수출하고도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정부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기를 바란다.

